

의안번호	2213453
의 퇴 인	김대식의원
회 답 일	2025.11.10.
추 계 번호	25C557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제2항 후단 신설)	재량규정
2	안 제11조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음(제1항) 4. 기초의학(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면역학 등 의학의 기본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을 말함) 또는 필수 의료(진료가 진연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분야로서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형평성 있게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분야를 말함) 전공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금, 취업 연계 등 지원사업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1조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기초의학과 필수의료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정안은 교육·훈련 실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 기존 사업의 확대 여부와 그 규모를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현행법 제11조제3항은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의 교육 및 훈련을 각 보건의료인력 협회에 위임하고 있으며,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11억원, 2025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39억원), 간호조무사 직무개발 교육지원(3억원),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지원(14억원) 등의 국고지원 사업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에 2025년 기준 101억원,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에 40억원 등을 배정하기도 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